

# 조교임용규정

- 제정 : 2006. 3. 1.
- 개정 : 2006. 8. 1.
-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2012. 6. 29.
- 개정 : 2017. 2. 28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조교의 임용 및 복무와 급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조교의 인사처리는 정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정의)** 조교라 함은 각 학과에 소속되어 수업준비, 학생지도, 실험·실습, 교육용 기자재관리, 학사행정업무 등 제반 사항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.

**제4조(임용)** ① 조교는 소속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조교는 호봉제(기능직 9등급)로 임용한다. 단, 2004년 9월 1일 이후 임용자는 연봉계약제로 할 수 있다.

③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단, 2004년 9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조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, 연임후에는 당연 퇴직한다.

**제5조(정원)** 조교의 정원은 학과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.

**제6조(자격)** 조교는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교육공무원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2. 전문대학 졸업 이상 자

**제7조(급여)** 조교의 급여는 본교 급여기준에 따른다.

**제8조(수당)** 조교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야간실습 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정년)** 연봉계약제 이외의 조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.

**제10조(복무)** ① 조교는 산학협력처장 및 소속 학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복무하되 산학협력처장이 우선한다.

②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본교 일반직원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1. 2004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는 이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.  
2.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정된 실습조교임용규정, 사무조교임용규정, 교육조교임용 규정은 이 규정으로 통합하고, 동 규정은 폐기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